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가단60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4281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가단6040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로

담당변호사 김학목

변론 종결 2022. 11. 24.

판결 선고 2023. 2. 16.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9. 1.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0. 접수 59780호로 마쳐진 소유권경정등기 중 소외 C의 소유지분(3/7)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9. 1.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120,6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친언니인 C을 상대로 대여금(약정금) 청구소송(2018가소184430)을 제기하여,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17,72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12. 3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C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7631)은 2020. 5. 15.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C은

원고에게 17,698,024원 및 그 중 17,400,000원에 대하여 2008. 3. 2.부터 2008. 12. 3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C은 대법원에 상고(2020다234347)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3. 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C의 남편인 망 D은 2019. 1.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C, 자녀인 피고, E이 있다(상속지분 C 3/7, 나머지 상속인들 각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다.

다. C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9년경 채무자인 C을 대위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6. 5.

소유권이전등기(상속지분 C 3/7, 나머지 상속인들 각 2/7)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1)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9. 6. 5.자 소유권이전등기(상속지분 C 3/7, 나머지 상속인들 각 2/7)에 관하여 2019. 6. 10. 피고를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C은 1998년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상당한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별도의 재산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4(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실조회 회신, 감정평가사 F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그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켰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3),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이 부분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 C의 상속지분(3/7)을 모두 피고가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해당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로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 중 C의 상속지분(3/7)에 관한 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균부

별지

날짜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C이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는 점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망 D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부양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평가된다.